



반려동물대량생산과경매 그리고식용도살실태보고서(2)

2014년 3월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 2 편

1. 생명이 무한 판매되는 곳 - 반려동물 경매장의 실태
2.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
3. 국내외 반려문화의 고찰
4. 불법 번식장/경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5. 보고서를 마치며

목 차

I. 생명이 무한 판매되는 곳 - 반려동물 경매장의 실태	1
1. 개 요.....	1
2. 반려동물 경매장의 문제.....	3
2.1 조사 의미 : 경매장의 역할과 의미/ 성격에 따른 분류.....	3
2.2 실태조사.....	6
2.2.1 대전경매장 : 긴밀하게 연결된 대규모 번식장-경매장-애견샵의 공생.....	6
2.2.2 서부경매장 : ‘우수종모전 경매’를 이용한 품종서열화, 종·모전 돌리기.....	11
2.2.3 경서전전종경매장 : 반려동물의 무덤, 반려동물 최후의 경매처.....	15
3. 문제제기.....	19
3.1 경매장의 법적 위치와 오해.....	19
3.2 경매장을 매개로 벌어지는 동물학대.....	21
II.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	23
1. 불법 번식/경매장의 방지.....	23
1.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과 불법 번식/판매업 관리실태.....	23
1.2 농림부와 반려동물생산자협회.....	25
1.2.1 생산자협회에 대한 농림부의 법인 인가 및 실태.....	26
1.2.2 .생산자협회 소속 생산농가에 대한 약품 지원 시범사업의 실태.....	26
2.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의 부재.....	30
3. 반려동물 산업을 매개로 확산되는 개식용과 잘못된 법의 해석.....	32
3.1 불법 번식장/애견 경매장을 매개로 한 개도살 실태.....	32
3.2 불법 ‘식용개’농장에 대한 잘못된 법의 해석.....	32
4. 동물보호 전담부서의 부재.....	35
III. 국내인 반려문화의 고찰	38

1. 국내 동향.....	38
2. 국외 동향.....	40
3. 한국 소비자의 문제.....	44

IV. 불법 번식장/경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51

1.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51
1.1 현행법에 근거한 조치.....	51
1.1.1 불법 번식장/경매장 조사 및 신고/등록 유도.....	51
1.1.2 생산 판매업 실태 전수조사 및 적법 업체 관리·감독.....	52
1.1.3 불법 식용개 농장 폐쇄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발.....	53
1.2 법 개정을 통한 조치.....	55
1.2.1 등록/신고제도의 보강 및 처벌규정의 상향.....	55
1.2.2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 개미농장의 일체 점검.....	55
1.2.3 사육/판매 두수의 상한제 도입.....	56
1.3 동물보호전담 부서의 신설과 전문성 강화.....	57
2. 영업자의 역할.....	59
3. 소비자의 역할.....	60
3.1 사지 않고 입양하기.....	60
3.2 품종 따지기 않기.....	60
3.3 건강하고 행복한 평생반려.....	60

V. 보고서를 마치며..... 62

[별첨 1]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 성명서(2014. 2.5.).....	64
[별첨 2] 애완동물경매장에서 팔려 무참히 도살된 리트리버와 멜러뮤트 (2014. 2.3.).....	66
[별첨 3] 2013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68
[별첨 4] 2012년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농림축산식품부, 2015.5.7.) 중 일부.....	69

표 항목

[표 1] 거래 규모가 파악된 전국 16개 반려동물 경매장의 거래 규모.....	1
[표 2] 생산자 협회 소속 농가 조사 개괄표.....	28
[표 3] 가정내 반려동물 수 추산.....	38

I 생명이 무한 판매되는 곳 - 반려동물 경매장의 실태

1. 개 요

반려동물의 고통을 무한 증폭하고 순환시키는 ‘고통의 허브’ 경매장

전국에는 최소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고, 이 중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 경매장에서 1회 거래되는 동물의 수는 소규모 경매장의 경우 150~200마리, 대규모 경매장의 경우 500~600마리에 달한다. 이를 합산하면 최소 매주 5천 마리, 매달 2만 마리, 매년 24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경매에 부쳐진다. 이 수치는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의 총 수를 가장 인색하게 합산했을 때의 규모이므로 최소한의 수치이고, 실제 경매되는 동물의 총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거래 규모가 파악된 전국 16개 반려동물 경매장의 거래 규모

경매장	주소	거래규모(마리)	거래일
한국애견경매장	서울시 중구 목정동	150	? ¹⁾
경기애견경매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760	1회 500~600	월, 금요일
서울펫경매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98-8	200~300	화요일
경서전견종경매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95	250	일요일
서부애견경매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65-4	1회 200~250	화, 일요일
코독스경매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93	150	화요일
코아스경매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1101	300	화요일
하이펫월드경매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453-3	1회 250	화, 토요일
천안119애견경매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20-24	300	목요일

경매장	주소	거래규모(마리)	거래일
대전애견경매장	대전시 중구 대흥동 5-5	1회 500~600	월요일
대전유성경매장	대전시 유성구 갑동 388-37	300	목요일
신탄진알프경매장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150~200	월요일
대구애견경매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150~200	월요일
칠곡대경경매장	경상북도 칠곡군	150~200	월요일
전국애완동물경매시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1162-42	1회 250	월, 목요일
광주애견경매장 광주애견경매장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호남동광주남구 백운동	150~200	금요일

반려가족이 15년 이상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생명체들이 경매장을 통해 매주 5,000마리 이상 판매되거나, 추가 번식을 위해 종·모견²⁾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반려동물이 과잉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서 제대로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것’으로 변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일례로 주당 약 9천여 명의 신생아를 맞이하기 위해 사회가 무얼 준비하는지, 한 가정에서 신생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살핌과 교육을 계획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성격은 다를지언정, 하나의 가족으로 불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책임있게 보살피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과 유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비용’을 가늠해 본다면, 경매장을 통해 사회에 유입되는 동물들의 수가 얼마나 버거운 규모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행정추계만으로도 매주 1,9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이 판단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장’의 동물학대나 미등록 불법영업도 문제이지만 유기와 학대, ‘안락사’란 이름으로 살처분에 내 몰리는 동물들을 지금과 같이 계속 밀어내는 경매장은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다.

주제어 : 번식장, 경매장, 종·모견, 나까마, 개미농장, 품종지상주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개식용, 동물보호법

1) 2013년 말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중구청에서 폐업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역 이전인지 폐업인지는 불확실하다.

2) 종견은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개’로 통상 ‘교배를 해 주는 수컷’을 의미하고, 모견은 ‘새끼를 낳는 어미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경매장의 문제

2.1 조사 의미 : 경매장의 역할과 의미/ 성격에 따른 분류

‘애완’동물 경매장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다. 번식업자는 동물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경매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경로를 확보함으로써 번식을 지속하고 규모도 넓힐 수 있게 된다.

경매장에서는 불법 번식농가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동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경매장은 불법 번식장이 확대·재생산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경매장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판매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매장이 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의 정당한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음이 그들이 발행하는 경매 전표를 통해 강하게 의심된다.

카라는 불법번식장과 경매장을 조사하면서 크게 세 종류의 경매장을 접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경매업을 하면서 불법/적법 번식업자 및 애견샵 등 소매판매업자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경매장이다. 대부분의 경매장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종류의 경매장은 주로 어린 동물을 판다. 자건을 사가는 사람들은 애견샵 업주, 경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점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강아지 나까마, 이후 모견으로 쓰기 위해 암컷 강아지를 사는 번식업자, 개미농장³⁾ 업주들이다. 때에 따라 종·모견도 기존의 번식장에 팔거나, 신규 번식업을 부추겨 추가적인 번식농장의 확산을 조장한다. 여기서 생산된 반려동물들을 다시 경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의 뒤를 봐 주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경매장이 대형애견샵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태조사 경매장 중 ‘대전애견경매장’(이하 대전경매장)이 여기에 속한다.

3)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번식업을 하는 경우를 일명 ‘개미농장’이라고 부른다. 모견을 적게는 1~2마리에서 많게는 20~30마리까지 데리고 번식업을 하는데, 대부분 가정집에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신고 번식업에 속한다. 개미농장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반려동물로 키우려고 암컷을 사간 뒤 새끼를 낳아 애견샵에 되파는 경우도 많다. 한번을 팔았든, 여러번을 팔았든 모두 개미농장식 번식업에 동참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나까마’⁴⁾라 불리는 중간 판매상이 모이는 경매장이다. 나까마는 종·모견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인데, 이들이 주로 모이는 경매장의 경우 종·모견을 경매하는 시간을 따로 배정하거나, 아예 종·모견만 경매하는 날짜를 독립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나까마는 종·모견을 매입하여 아직 상태가 괜찮으면 필요로 하는 번식농장에 값을 얹어 판매하거나, 다른 경매장에서 웃돈을 붙여 판매해서 유통이익을 챙기면서 번식농장들 간에 모견을 중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김포의 ‘서부경매장’과 팔당에 있는 ‘경기경매장’이 있는데, 두 경매장은 번갈아가며 ‘우수 종모견 경매’ 날을 따로 잡아 경매한다. 이들 경매장은 경서경매장처럼 식용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처럼 강조하지만 죽을 때까지 종·모견을 돌리면서 피를 짜내는 나까마들의 영업을 보장하고, ‘우수’에 밀리는 개들의 ‘폐견’을 부추기고, 품종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더 잔인하고 뿌리 깊은 ‘악’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경매에서 식육견의 경매까지, 자견, 모견, 종견, 폐견 등 모든 개를 파는 경매장이다. 이와 같은 경매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내부공간에서 자견을 팔고, 소위 ‘폐견’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무런 보호 장치 없는 외부 뜰장이나 철창에 갇혀 식용으로 판매된다. 폐견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모견, 생산능력은 있으나 이쁜(?) 새끼를 낳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모견, 역시 생산능력은 있으나 유행에 밀려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모견, 마찬가지로 팔리지 않은 어린 대형견, 병견 등으로 마지막까지 최대의 이윤을 뽑기 위해 멸절된 생목숨이 식용으로 팔려나간다. 이런 경매장은 소위 번식장, 경매장의 골칫거리를 뒤처리 하는 경매장이다. ‘경서전견중 경매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매장은 품종유행을 만들어 소비를 부추기고, 번식장에 유행에 따른 종·모견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2개월령 강아지보다 더 작을수록 높은 값을 매겨 소비자에게 쏟아내는 곳이다. 한 마디로, 경매장은 한쪽에서는 ‘유행에 따르는 번식’을, 다른 한쪽에서는 ‘유행에 따른 소비’를 강제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경매장이 반려동물의 판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장이야말로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악순환이 굴러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핵심엔진**이다.

경매장의 대규모화, 난립화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생명’으로 여기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발

4) ‘나까마’란 정품이 아닌 비품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본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견)나 까마란 지역마다 산재해서 모견 거래의 다양한 방식에 관여하는 중간상인이다. 번식장과 경매장, 번식장과 번식장(A농장에서 말티즈 모견이 필요한데 B농장에서 적합한 말티즈 모견이 나오면 나까마가 B농장에서 받아 A농장에 팔아 이익을 챙김), 경매장과 경매장(한 경매장에서 모견을 구입해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경매장에 되팔기) 사이를 돌며 모견을 판매한다.

전된 인식과는 거꾸로 가는 방향인데,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무제한 판매하는 한, 쉽게 사고 쉽게 포기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산 동물일수록 함부로 취급당하고, 쉽게 버려진다. 경매장, 아니 정확하게는 ‘경매장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는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어 마지막에는 보호소에서 질병으로 죽거나, 살처분되는 비참한 현실이 끝없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매장은 반려동물 산업에서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실태조사

2.2.1 대전경매장 : 긴밀하게 연결된 대규모 번식장-경매장-애견샵의 공생

- 매주 월요일 500~600마리(개 350~400, 고양이 150~200)의 동물들이 경매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매장 중 한 곳으로, 회원 예약제로 운영된다[그림 1].
- 경매장 주변으로 소위 ‘애견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애견거리에는 수많은 상설 애견샵, 용품 할인매장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매장과 실질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2].
- 대전경매장의 업주 김철규는 생산자협회 등기이사로서 전북 정읍에 대규모 번식농장을 차려놓고 자신의 농장에서 번식시킨 개들도 경매에 부친다. 경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희숙 역시 생산자협회 등기이사이며, 은행동 애견거리에서 대형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5,6].
- 대전경매장은 주로 요즘 유행하는 작은 사이즈의 포메라니언, 말티스, 푸들을 경매하는데, 2013년 연말을 앞둔 경매일에는 전국의 생산자협회 회원들 다수가 경매장에 집결했고, 개와 고양이의 수가 각각 500마리에 이르렀다. 특히 경매 시작가가 80~1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벵갈고양이 등 고양이의 경매가 다른 경매장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150마리 ~ 최대 500마리)[그림 3].
- 경매가는 천차만별로 변동폭이 있으며 (포메라니안 시작가 30만원, 시추/푸들 10-15만원, 벵갈고양이 80-100만원, 물지마 1만원 거래), 건강상태와 외모에 따라 시작가가 판이하나 대체적으로 15~3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코카스파니엘의 경우 5만원 헐값에 거래가 시작되기도 하고, 품종이 아니거나 품종이더라도 흠을 가질 경우 물지마식의 1만원 경매가 이루어진다.
- 1회 경매규모 1억 내외, 경매 거래 시 10%의 수수료(판매자 5% + 구매자 5%)를 통해 1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순이익이 매주 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번호도 없는 간략한 경매전표가 영수증의 전부이다. 경매전표를 보

았을 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그림 7].

- 대전경매장에 오는 농장수는 약 150여개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신고된 번식업체가 극소수인 상태에서 경매장이 성업 중인 점을 감안하면 경매장이 거래하고 있는 번식장은 대부분 미신고 불법 번식장일 수밖에 없다. 불법 번식업자들의 농장에서 번식시킨 동물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경매에 부치고, 판매해줌으로써 사실상 불법 번식업을 부추기고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 실제 경매장에 온 사람들 중 일부를 확인한 결과 (가나, 다해, 대전제일, 보령, 선산프로, 소이농장, 송림, 작은농장, 천안1번, 태림, 하나, 흥성해피 등) 거의 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입찰가격 등 낙찰과정은 전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경매장 업주와 앞의 직원들만 볼 수 있다. 만약 미리 자리 번호와 인물을 파악하고 있다면, 경매사에 의해 특정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게 가능한 구조이다. 실제로 경매 입찰가가 비싸다는 등 경매의 불투명성에 불만을 갖는 참여자도 있었다.
- 현재 반려동물의 수요가 고양이로 옮겨가고 있는 트렌드가 대전경매장에서 확인되었다. 조사 후반기로 갈수록 경매되는 고양이의 수가 늘어나 거의 개의 두수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러 경매에 부쳐지는 동물 중 고양이가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끄러운 경매장에 별도의 격리 시설 없이 개와 한 공간에 진열되어 경매되고 있었다. 특히 낮은 환경에 예민한 고양이들이 추가적으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어미와 새끼들이 함께 경매장에 나왔다가 새끼들이 경매되기 위해 어미로부터 떼어내지자 어미가 낄낄거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며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 동물보호법 상 금지되어 있는 2개월 이하의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그림 8].

[고찰] 대전경매장은 고양이 판매 전국 1위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버려지는 유기묘, 이 유기묘들이 살아남아 형성된 길고양이 군집, 그리고 길고양이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골

몰하고 있지만, 경매장은 이러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주 500여 마리의 품종(?)묘를 쏟아낸다. 주변에 자리 잡은 애견샵에서도 유난히 크기가 작고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똑같은 진열장에 마치 ‘인형’처럼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의 비뚤어진 반려견·반려묘 품종주의, 유행에 따른 반려동물 구입하기, ‘매입’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고양이 키우기 등 소위 ‘트렌드’를 주도하며, 오늘도 사회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반려동물을 뺏어내고’ 있다.



[그림 1] 대전애견경매장



[그림 2] 경매장 근처의 대형 판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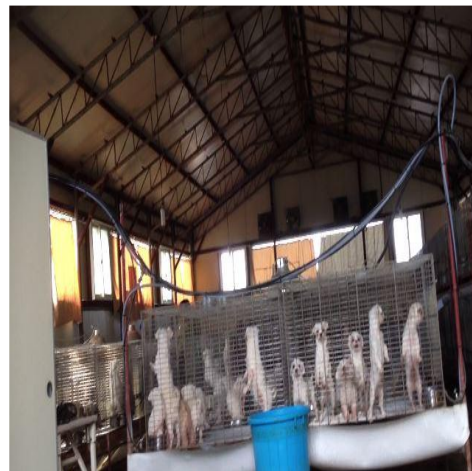
[그림 3] 경매 될 강아지들



[그림 4] 경매 중인 모습



[그림 5] 김철규의 선경농장 전경



[그림 6] 김철규의 선경농장 내부

[그림 7] 대전애견경매장 경매전표

대전애견경매장 (042) 272-0454

경매 전표 (구입자)

확인 :

경매일자: 2013년 12월 23일 작성자: 김

낙찰자 번호	낙찰자상호	견종	박스	성별	낙찰금액	경매 번호	출하자상호	비고
55	브리더	B/푸들	2	수	240,000	6	선경	-
55	브리더	시즈	6	암	250,000	23	루나	-
55	브리더	코카	7	수	40,000	30	루나	문
55	브리더	스피츠	8	수	150,000	35	쫄애견	-
낙찰 총 금액 :		₩	680,000				수수료:	34,000

수수료 포함 총액 **₩** **714,000**

매주 월요일 경매

대전애견경매장
042) 272-0454-5
011-9340-0470
FAX (042) 272-0454

(농협) 301-2422-2424-81 조

[그림 8] 대전애견경매장에서 경매 받아 온 4마리의 강아지



2.2.2 서부경매장 : ‘우수종모견 경매’ 를 이용한 품종서열화, 중·모견 돌리기

카라는 2014년 2월 9일 경서전견종경매장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카라의 항의집회로 경서경매장의 경매는 중단되었고, 이곳을 찾은 업자들이 근처 서부경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회 이후 서부경매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경매장 앞은 마치 외제차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온갖 종류의 외제차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경매장 관계자들은 카라의 기습 방문에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거칠게 항의했다.

카라가 경매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경매장 업주는 경매될 개들과 개들이 대기하는 곳을 보여줄 테니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여 경매시작 전에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3~4층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철창과 플라스틱 박스에 새끼 강아지들이 있었고, 대부분 2개월 미만으로 보였다.

이날 경매장 정문유리에 손글씨로 쓴 포스터에는 “2월 19일 우수종모견 경매. 장소:서부경매장. 시간 2시”가 적혀있었다. 카라는 종모견 경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후 서부경매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 2014년 2월 19일 서부경매장에서 예정대로 중·모견 경매를 하였다. 경매장협회⁵⁾에서 주장하는 우수 중·모견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차량들이 귀가 시 종견 혹은 모견을 태우고 돌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그림 9,10].
- 방문한 차량 당 적게는 1~2마리 많게는 20여 마리의 개들을 싣고 돌아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으며, 확인된 개들은 모두 성견이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물건처럼 상태를 확인당하는 개들의 모습들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주인의 품이 아닌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차량 내 혹은 케이지 내에 물과 사료의 적절한 공급이 되는지 의심스러웠으며, 한 케이지에 다수의 다른 종의 동물이 들어가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물이 이동되고 있었다. 당일 20여 마리를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차량 뒷좌석 부분부터 화물칸까지 개조되어 다수의 개들이 과밀되어 있었다(2014년 8월 동물보호법 9조 2가 시행이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5) 2014년 2월 4일 MBC ‘PD수첩’에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가 방송된 직후인 2월 5일, 방송에 대한 입장을 받 빠르게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확인된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는 경기경매장, 광주경매장, 알프경매장, 유성동양경매장, 부산경매장, 대구경매장, 대경경매장, 서부경매장, 코아스경매장, 한국경매장 등 10여 곳이 회원으로 있는 경매장 업주들의 임의 조직이다.

- 서부경매장에서의 종·모견 경매 당시 20여 마리의 개를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을 추적한 결과, 해당 차량은 경매장협회 소속 경매장 서너 곳을 돌며 종·모견을 거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타렉스 차량뿐만 아니라 서부경매장에서 다수의 개들을 사들였던 또 다른 차량도 발견되었다. 이는 종·모견 경매 당일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모견을 돌려가며 판매하는 일명 ‘나까마’들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그림 13,14].
- 종·모견 돌리기는 종·모견으로 이용되는 개들이 번식장과 경매장을 회전하며 이용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착취당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매장협회에서 “우수 품종을 양산하는 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종·모견경매’는 인간의 오랜 친구인 개를 철저히 하나의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그들이 주장하듯 “노령견 및 폐견을 자연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며 생을 마감하게끔 대부분의 생산농가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임이 밝혀졌다[그림 15].
-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에서 반려동물 경매장 실태가 방송된 직후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별첨 1. 2014년 2월 5일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의 성명서]. 성명서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을 위해 격월로 우수종모견 경매를 통해 생산농가에 유통보급하고 있다.”[그림 16]

“일부 물지각한 번식농장과 달리 평생의 반려동물로 노령견 및 폐견을 자연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며 생을 마감하게끔 대부분의 생산농가는 노력하고 있다.”

[문제제기] 성명서의 주장처럼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모견이나, 새끼를 낳아도 ‘우수’한 품종에 들어가지 못해 수익을 낼 수 없는 모견, 즉 폐견을 끝까지 보살피면서, 한편에서는 잘 팔리는 품종을 계속 받아들여 번식하는 것은 가능한가? 필요 없어진 번식견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폐견’이란 말조차 있을 수 없다. 폐견이란 ‘처리’되어야 할 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우수 종·모견을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노령견과 폐견을 최선을 다해 돌보며 생을 마감하게 하라고 주문한다. 우수 종·모견을 입식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우수한’ 폐견이 생겨나며, 노령견의 기준 연령도 낮아진다. 물론 종·모견의 회전이 빠를수록 경매장의 수익은 올라간다. 성명서에는 격월로 우수종모견 경매를 한다고 하나 2월에 이어 3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을 예정이다. 우수종모견 경매는 경매장협회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

문에 당일 경매 수익은 경매장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경매장협회의 우수종모견 경매야말로 가장 잔인한 동물거래이다. 특히 모견은 빼앗길 새끼를 낳기 위해 평생을 여기저기 팔려다닌다. 생식수단으로 여겨졌던 여자노예의 삶을 떠올리면 정확하다.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폐견이 되어서야 번식장을 빠져나오지만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다.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이 15년이지만 모견은 5~6살이 되면 이빨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모견 경매를 자랑삼아 성명서에 버젓이 쓰는 오늘날 한국의 반려동물 경매업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생명에 대한 불감증, 시대변화에 대한 몰이해가 끔찍하고 처참할 뿐이다.

우수종모견의 유통은 품종주의와 혈통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우수하지 못해 - 동물의 우수함과 상관없이- ‘잘 팔리지 않는 동물’의 차별과 도태를 전제로 한다. 꼭 개소주나 식용개로 잔인하게 도살해야만 몰지각한 것은 아니다. 인간만의 기준으로 다른 생명을 차별하고, 복지와 건강을 훼손하면서까지 작고, 특이한 동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동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개는 그 ‘고유의 충직한 품성’으로 반려동물이 되었고, 1만년이 넘는 세월을 인간에게 사역하며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세상에는 오직 한 종의 개(Canis Familiaris)가 있을 뿐이다. **우수 종·모견 유통의 다른 이름은 ‘어미개에 대한 철저하고 잔인한 착취’이다.**



[그림 9] 나까마 차량에 가득 실려 있는 모견



[그림 10] 차량에 종모견을 싣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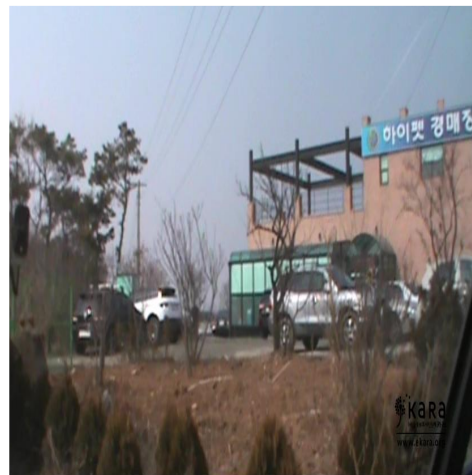
[그림 11] 개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1



[그림 12] 개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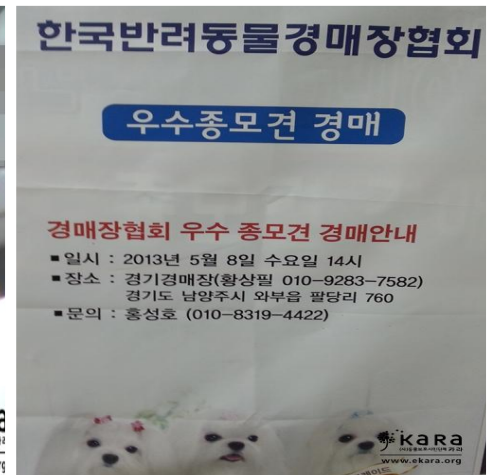
[그림 13] 나까마 차량이 들린 경매장 1



[그림 14] 나까마 차량이 들린 경매장 2



[그림 15] 가는것을 거부하는 모견의 모습



[그림 16] 우수종모견 경매 포스터

2.2.3 경서전견중경매장 : 반려동물의 무덤, 반려동물 친후의 경매처

- 경서경매장 외부의 뜰속 대형견들, 마당에 뺨뺨이 구겨 놓여진 자그마한 개들은 사람들의 손길을 갈구하며 이사람 저사람 기웃거린다. 리트리버 한 마리는 얼마나 출산을 많이 했는지 젖이 많이 늘어서 있다. 이 리트리버는 외부경매장의 뜰속에서 경매자들을 보고 꼬리를 흔든다. 두발로 서서 반기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누렁이들은 좀 더 영리하다. 절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애쓴다. 그들은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함께 철장에 갇힌 다른 누렁이들과 서로를 의지한다. 대전경매장처럼 말끔한 동물들은 아니지만, 건물 안에서는 아직 이용가치가 있는 모견들과 어린 개들이 대전경매장보다 조금 싼 값에 경매에 부쳐진다[그림 17].
- 외부 경매장의 개들 중 나이든 모견들 대부분은 어릴 때 대전경매장처럼 반려동물을 뽑어내는 경매장에서 팔렸을 것이며, 모견이 되어 번식농장에서 새끼를 잘 낳을 때까지는 서부경매장에서처럼 ‘우수종모견’으로 회전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다 이제 다른 ‘우수종모견’에게 밀려 경서경매장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닐까? 유기견이든, 폐견이든, 안팔린 대형견이든 개식용산업이 더 이상 쓸모없어진 모든 개들을 집어삼킨다. 경서전견중애견경매장 간판 아래에는 노란바탕에 빨간 글씨로 ‘개고기’라고 쓰여 있다[그림 18].
- 외부 경매장에 있는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모견이나, 병들거나 제 때 팔리지 않은 대형 품종견(골든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콜리, 펠러뮤트 등) 및 도사견, 진돗개, 누렁이들은 식용으로 도살되기 위해 팔려나가며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으로 도살자들 앞에서 반가워 손을 핥거나 꼬리친다[그림 19].

“대형견은 사료값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농장에서 계속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계속 키운다 해도 이후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보장도 없어서, 불쌍하고 아깝고, 추운데 밖에 저렇게 있는 것도 안 됐지만 빨리 개고기용으로라도 내보낸다.” (한 농장주의 말)

- 위생 상태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외부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은 모두 개고기용이고 정황상 인근 덕이동, 양천구 등에 위치한 번식장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매에서 유찰된 개는 농장주들이 다시 가져간다.

- 경매장 뒤편에는 닭 등 조류들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주로 리트리버로 구성된 대형견들은 좁고 열악한 상태의 뜰에서 사육되고 있다[그림 20,21].
- 경매는 매주 일요일 이루어지며, 1일 경매되는 동물은 자견 100마리, 모견 200마리, 육견은 대형견 소형견을 합해 50마리 내외에 이른다.
- 경매는 1만원 짜리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 5만원 선에서 시작되며, 가장 높게 나오는 가격이 포메라니안 100만원이나 낙찰가는 거의 5~15만원 사이이고, 입찰자 한 업소 당 거래되는 개들의 마리 수는 5~20마리 정도이다. 식용으로 팔리는 개들은 대부분 15만원에 낙찰되며, 폐기처분되는 모견은 3~4마리를 묶어서 10만원, 6~7마리 묶어서 20만원 등 유동적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 경매장 관련자가 개고기용 개의 시세는 물론, 도매업소의 주소까지 알고 있었으며, 일반 시중가(400g 당 8000원), 도매가(600g 당 7000원)도 이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었을 만큼 일상적으로 반려견들을 잔인한 도살과 식용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 경매장 매출은 매회 3,000~4,000만원 선이며 순이익은 200~3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대전경매장과 마찬가지로 전표 확인 결과 세금 포탈이 강하게 의심된다[그림 24].
- 경매장을 4주 연속 관찰할 때마다 어김없이 라보 차량이 경매에 참여한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많게는 20여마리까지 정기적으로 구입하였는데, 추적해서 확인한 결과 입찰한 모든 개들을 식용으로 도살하고 있었다[별첨 2. 애완동물경매장에서 팔려 무참히 도살된 리트리버와 맥러뮤트 (2014. 2.3.)]
- 라보 차량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외부경매장의 개들을 대량 입찰해 가는 포터 트럭 등 다른 차량들도 있었으며 이들도 도살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사람을 피해 움츠리고 있는 누렁이들



[그림 18] 경매장 외부에 있는 '개고기' 간판



[그림 19] 외부 경매건 모습



[그림 20] 외부 대형견



[그림 21] 외부 경매장에 있는 닭과 조류



[그림 22] 경매 후 실러가는 견들



[그림 23] 올카미로 개를 던져 올리는 모습

[그림 24] 경서전견종경매장의 경매 전표

경매 전표 (판매자)							
회원번호: <input type="text" value="번호입력"/>		이름(상호): <input type="text" value="안"/>		날짜: 2013년12월29일(일)			
순서	견종	성별	나이	낙찰금액	구입자	판매자	비고
40	포메라니안	수	0	40,000	4번	11	0
합계				₩ 40,000	판매수량		1
수수료 포함 총합:				₩ 38,000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경매				경서 전견종 경매장 (02)3158-0028 / 010- 신한은행 321-02- 외환은행 620-415- 농협 171829-52-			



3. 문제제기

3.1 경매장의 법적 위치와 오해

현재까지 반려동물 경매업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부는 ‘경매업을 규율할 규정이 없다’거나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 왔다.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의 부재, 관련지식의 결여, 해결의지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2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으로 나누고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그림 25,26].⁶⁾

동물경매장의 경우 경매의 법적 개념으로는 ‘계약체결의 알선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알선이란 계약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장소, 사람 등을 이용해 조력하는 중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경매장은 현행법상 번식자와 중간소비자의 동물 매매계약을 중개, 알선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업자가 (중간)소비자에게 동물 판매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되어 정확히 동물판매업으로 해석된다.

6)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에 두 가지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제공된 물품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개의 경우 축산업상 ‘가축’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려견의 사육은 축산업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도 산업동물 도매 및 소매업과 애완동물 도매 및 소매업은 동일한 산업분류코드로 정하고 있다(46205). 따라서 경매장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개념은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라 농축산업상 소비자의 개념이 적용되어 축산업을 위하여 동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것이 중간소비자이건, 최종소비자이건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주무부서 역시 농림부 축산국의 방역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축산으로 분류된다 (경서경매장 고발장 참조.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3472&page=0).

[그림 25] 동물보호법 제32조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그림 2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6>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2 경매장을 매개로 벌어지는 동물학대

- 경매장에서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된 2개월령 이상 판매를 어기고 1개월령을 전후한 새끼부터 경매에 올라온다. 이는 아직 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한 배 새끼들과 함께 사회성을 길러야 할 어린 동물들에게 정서적 박탈감을 초래함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정상적 면역형성을 저해한다.
- 번식업자와 경매업자들은 펫샵에서 판매되는 시점을 2개월령 판매의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나, 이는 동물이 사람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작고 귀여울 때인 40일령 즈음에 시장에 내 놓아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술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다. 2개월은 어미와 떨어지는 어린 동물의 생존과 복지를 고려하여 최초 판매되는 시점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2개월을 어기는 것은 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출산으로 신체적 건강이 망가진 모견들은 한참 새끼에 대한 애정을 가질 때 품안의 새끼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어 모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또한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농장에서 경매장으로, 경매장에서 경매장으로 팔려 다니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소모는 물론, 사람을 따르는 개의 본성 상 주인이 바뀌는 데에 따른 정신적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 경매장은 우수종모견의 판매라는 허울 아래 소위 혈통견과 비혈통견으로 생명의 등급을 나누며, 품종견 지상주의를 선동하여 반려동물=품종견/품종모라는 그릇된 기준을 형성시킨다. 이것은 모든 정신적, 신체적 동물학대의 뿌리를 형성한다.
- 전문 브리더들은 새롭고 색다른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하여 잘 팔리는 동물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건강과 본성 그리고 생태적 특성을 거슬러 근친교배를 서슴지 않으며, 그 결과 각종 유전적 결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소형 품종견에 대한 소비 욕망이 높다. 장난감 같이 작은 값비싼 티컵 강아지⁷⁾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티컵 강아지는 수명이 정상수명의 절반 이하로 줄거나 어린 나이에 발현되는 각종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Tea컵 강아지란 찻잔에 쏙 들어가는 작은 체구의 애완견을 뜻한다. 티컵 강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작은 개체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다, 근친에 근친을 거듭하여 점점 체격이 작아지는 열성인자의 약한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경매장에서 혈통견이 자견으로 팔려 반려견으로 평생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모견으로 혹사당하다가 폐기처분되며, 오직 극소수의 농장에서만 노령견 및 폐견을 자연사할 때까지 돌볼 뿐이다. 대부분의 생산농가들은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모견들을 나까마를 통해 처분한다.

II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

1. 불법 번식/경매장의 방지

1.1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⁸⁾과 불법 번식/판매업 관리실태

-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는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 따라서 APMS의 정보를 근거로 만들어진 2차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 지자체 별로 APMS의 사용방법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방지 상태이다.
- 불법 번식·판매 업소에 대한 조사 및 단속과 APMS의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동시에 필요하다.
- 농림부는 동물판매업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경매업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판매업으로 규율하기 애매하다.”며 무법상태 영업을 방치함으로써 연간 최소 24만 마리의 동물들이 우리 사회로 무차별 유입되도록 하여, 연간 10만 마리(2012년 기준)에 이르는 유기 동물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APMS에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APMS의 정보가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APMS의 관리는 매우 부실하고, APMS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매우 상반된다. 정부에서 최초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2008년 당시에는 번식업, 생산업, 수입업에 대한 구분 없이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이라는 한 종류의 서류로 등록을 받았으며, 등록서류 안에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를 체크하도록 하였다[그림 27]. 만약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 APMS에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번식업을 하는 농가가 판매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농림부의 관계자는 APMS에 기록된 번식업과 판매업의 실태는 신뢰하기 힘들어 농림부에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8)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로 동물보호법/정책 정보, 유기/유실동물 정보, 동물등록, 동물판매/수입/생산/장모업의 등록과 신고 내역 집계, 농장동물, 실험동물의 보호와 정보 등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동물보호 통합사이트이다.

일례로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APMS에는 단 한곳의 번식업소도 검색되지 않지만,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10여 곳의 신고된 번식장이 있었다. 이 10여 곳은 대부분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신고가 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자가 생산업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APMS에는 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관련법을 제·개정 할 때, 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간 반려동물 산업을 관리해 오면서 APMS의 잘못된 정보를 재정비 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정보를 제시할 때도 APMS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다.⁹⁾

동물판매업은 시설기준 등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별 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펫샵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을 한 지자체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분점을 냈을 경우에도 분점이 위치한 지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장소변경에 뒤따른 재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불법영업에 속한다. 그러나 몇몇 판매업체는 이전을 했거나, 분점을 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농림부와 반려동물생산자협회

- 농림부는 생산자협회 이사들조차 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질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번식업을 한 이사가 있음에도 생산자협회를 법인으로 설립 인가하였다.
- 생산자협회의 사단법인 승인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적법 혹은 불법 농가인지 여부조차 조사하고 있지 않다.
- 농림부의 3억 3천만원(마리당 1,200원의 약품 지원을 기준으로 275,000 마리 분)에 해당하는 ‘애완생산농가’ 방역비지원사업이 지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자협회를 매개로 지원되었다.
- 생산자협회에 방역비를 지원한 이 사업의 성과로 지자체별 몇 개의 번식업소가 영업신고를 하게 되었는지 사업성과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 시범사업의 시행 시 농림부는 생산자협회의 실체, 즉 신고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신고 지도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진 바 없다.

9) 2013년 12월 11일 중앙일보의 “발정제 맞고 온몸에 옥창...동물 번식장은 동물지옥” 기사에 대해 농림부에서 제시한 설명 자료에서도 당시 APM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2년 말 기준 1,000여 개의 반려동물 생산(번식)업체 중 49개소만 신고를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1.2.1 생산자협회에 대한 농림부의 법인 인가 및 실태

반려동물생산자협회는 2010년 2월 농림부에서 정식 법인으로 인가 받은 국내 유일한 반려동물생산자들의 조직으로서 반려동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 출하조정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조사, 연구,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회의 이사 11명 중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인이며, 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4년이 경과 했음에도 오직 3인의 이사만이 적법하게 신고를 한 상태에서 생산업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미신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이사 중에 한 사람은 부산의 수질보호구역에서 불법 생산업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이전하였다.

카라에서 명예감시원 교육 시 ‘반려동물생산자 협회’ 소속으로 신청한 농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미신고 불법농가였다[표 2].

1.2.2 생산자협회 소속 생산농가에 대한 약품 지원 시범사업의 실태

2013년 1월, 농림부는 번식업자들의 신고를 계도한다는 명분으로 ‘애완견 번식 농가에 대한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 시범사업’을 공표하였다[별첨 3. 2013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국비 70% 지방비 30%로 동물 1마리당 1,200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의 예산은 총 3억 3천 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자체는 ‘관내 애완견 생산 농가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실시요령에 따라 약품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생산업 영업신고 대상임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었다.

카라의 조사 당시 불법 번식농가 중 몇몇 농가에서는 약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는데, 지원을 한 곳은 농림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생산자협회로 기억하고 있었다.

“경매장에 강아지 팔러 갔더니 (생산자)협회에 가입하라고 하데, 그래서 가입했지. ...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부병약도 받고 귀약도 받고 다 받았던데, 우리는 협회에서 승용차 타고 나와서 회충약만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매장 가서 항의했다니까요. ... 그랬더니 다음에

봅시다. 지금은 다 나가버려서 없어요. 이러더라고. 구충약 서너통 주면서 저거네들은(협회) 9만원 짜리네 어찌네 그러데. 근데 9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미신고 번식장 농장주)

해당 농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농림부의 지시로 약품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고, 생산자협회가 약품을 지원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농림부는 약품 지원을 매개로 신고 대상임을 지도하라고 했지만, 미신고 번식장의 경우 대부분 이미 자신들의 영업이 신고대상임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불투명 한데 과연 약품지원을 받고 신고한 번식장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표 2] 생산자 협회 소속 농가 조사 개괄표

생산자협회 등기 이사	생산자협회 회원
-------------	----------

농장명	지역	신고여부	사육 규모 (추정)	사육방식 평사/케이지/혼합	건물의 채광/환기/난방 양호/보통/열악	위생/급식/급수/청소 양호/미흡/열악	분뇨처리상황 정화조유무 확인=유 확인안됨=무	(과악된) 종사자 인원수	특이사항 및 토지용도
선경애견	정읍	신고	700	케이지 평사 (6:1 비율)	외부:보통 내부:열악	외부건:보통 내부건:미흡	무 (분뇨 무더기 발견)	1 인외 가족 2 인	- 바로 옆에 도견장이 있음 - 참고용지, 생산관리지역
동산농장	부산	미신고	외부: 20~30 (장소 이전으로 남은 수)	케이지	난방 열악 (외부 사육건)		무 (바닥에 방치)	1 인외 가족 1 인?	- 평소 500 마리 사육 - 상수원보호구역 - 임야, 가축사육제한구역
반이농장	부산	미신고	300	케이지	환기:보통 난방:열악	급수:미흡	무 (바닥에 방치)	1 인외 가족 1 인	- 생산자협회 경남지회장 - 문화재보호구역 - 논,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자연녹지지역
우설농장	영주	미신고	70	케이지	열악	열악	무 (분변냄새 심함)	1	- 구청에 신고를 요청했으나 승인 안됨 - 주택가 - 가건물 - 대지, 가축사육시설금지구역
국화농장	상주	미신고	130~150	케이지	양호	양호	무 (설치중)	1	- 고속도로 접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건물 - 규모를넓힐예정 - 논, 가축사육제한구역
달래농장	김천	미신고	110	혼합	보통	미흡	무 (분뇨를 모아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건물 - 목장, 계획관리지역
로미애견	김천	미신고	100	케이지	보통	양호	유 (주변에분뇨 가노출되어 있음)	1 인외 가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 신고를 요청했으나 승인 안됨 - 가건물 - 도로 접도구역 - 대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신농장	성주	미신고	100	케이지, 평사 2 마 리	열악	열악	무 (확인안됨)	확인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건물 - 대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무지개 농장	경주	미신고	120~130	혼합 이동식평사 케이지	양호	미흡	무 (확인안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 신고를 요청했으나 승인 안됨 - 가건물 - 자연녹지지역 - 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 자연녹지지역

2.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의 부재

- 동물유기의 근본적 원인이 ‘대량번식-대량판매-무분별한 소비-유기-안락사(살처분)’의 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
- 무분별한 대량생산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동물보호법의 ‘동물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 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사육 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대량생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 판매자와 생산자를 양산하는 경매장 역시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의 정의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에 속함에도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농림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시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개칭하여 단순히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보호소가 아니라 동물보호활동의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의 경우 ‘소유자 동물등록제’(현재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유기가 늘어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는 TNR(Trap Nuter Return; 중성화 후 재방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기 고양이를 ‘길고양이 문제’에 포섭하여 그 해결을 위한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문제는 동물등록제와 TNR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에게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아무리 TNR을 하여도 계속해서 유기되는 고양이가 길로 유입된다면 이 정책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동물유기의 문제는 번식장, 브리더와 가정내 번식을 포함한 수많은 무차별 번식업(자), 경매장을 통해 대량판매를 증폭시키는 경매업(자), 관리되지 않는 수많은

적법 혹은 불법 판매업(자) 모두, 즉 동물을 한낱 ‘소비재’로 여겨 수요를 자극하며 공급하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동물 유기와 근본적인 해결은 ‘대량번식-대량판매-대량폐기’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연쇄 사슬을 끊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유기동물 문제의 최대 희생자는 이윤을 위해 생산되어 용도 폐기될 때까지 처참한 삶을 이어가는 동물들이며, 최대 수혜자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 유기된 반려동물이 ‘살처분’되면, 그때 비워진 자리를 ‘더 많은 새로운 동물’로 메꿔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자들이다.

정부의 정책이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직 발생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사후처리’ 수준에만 맴돌고 있는 한, 이 무의미하고 정당하지 않은 정책에 수많은 사회적 비용만이 지불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살처분되고 희생되는 동물에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죽음만을 강요하고 있다.

3. 반려동물 산업을 매개로 확산되는 개식용과 잘못된 법의 해석

3.1 불법 번식장/애견 경매장을 매개로 한 개도살 실태

‘식용개’의 번식·판매업자 그리고 일부 반려동물생산업자와 경매업자들은 식용으로 개들을 번식 판매해 오거나, 폐기대상인 개들을 평생 돌봐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덜기 위해 식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개도살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마치 폭탄 돌리 듯 이리저리 미루며 불법적인 개도살이 만연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개도살은 번식농장에서의 노골적인 도살, 경매장에서 사들인 반려동물의 식용도살이 버젓이 자행되는 등 오늘날 반려동물 번식·판매업과 뒤엉켜 한 뿌리를 이루며 더욱 제어하기 힘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의 도살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도적인 방법은 ‘마취제 투여 후 독극물 주사’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기 위해 죽이는 모든 방법, 즉 ‘전기도살’, ‘목매달음’, ‘흉기 구타’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잔인한 도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도 이런 행위들은 잔인한 도살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 등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의 동물보호감시원들은 시민들에게 ‘잔인한 도살’임을 증명할 자료 채취와 제시를 요구한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죽는 과정을 증거채취 해야 하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실상 잔인한 개도살은 방치되고 있다.

3.2 불법 ‘식용개’ 농장에 대한 잘못된 법의 해석

- ‘개’는 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법적 도축과 가공처리, 식육검사가 가능한 ‘가축’에 포함되었다가, 197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후 개는 합법적으로 도축과 식육검사를 할 수 있는 식용목적의 가축이 아니라는 의미가 명확해졌다.

-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구)축산물가공처리법, (구)축산물위생처리법 상 식용 목적의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어 개를 도살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전혀 없는 무법상태가 지속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개도살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혀 없는 무법(無法) 상태는 해소되었고, 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의 정의규정에 개를 포함시켜 동물보호법 상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결코 개도살에 적용되는 법률이 부재한 무법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이 없다’는 말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 ‘살아있는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에 별도의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의 적용은 동물보호법 상의 등록, 신고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개’¹⁰⁾의 일생과 관련된 행위와 그 행위자는 모두 동물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개번식 영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직무태만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식용개 번식농장은 미신고 상태로 난립되어 있다. 이들 생산업자들 중에는 ‘식용개’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식용개’를 생산·판매하다 종류만 바꿔 애견의 생산·판매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그리고 ‘식용개’와 ‘애견’사육을 병행하거나 폐기대상 애견을 ‘식용개’로 유통하는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다.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나(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축산업에서 요구하는 허가사항 등 규제사항에서 제외되어 있고,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축산법 제22조 2항 ‘축산업의 허가 등’).

따라서 축산법의 각종 규제에서 개가 제외됨으로써 산 동물(생체)인 개를 사육·유통

10) 모든 개는 동일한 조상을 가진 한 종(種)의 동물로서 이 동물들이 ‘반려동물’인 것은 그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개’들 고유의 ‘품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용개’와 ‘애완개’의 구분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기준으로도 나눌 수 없다.

(판매) 등의 방법으로 다룰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적용하여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축산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 등에서 정하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개’를 다루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명확히 그릇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 더러운 뜰장에서 음식쓰레기를 먹이며 학대 수준으로 사육하다 판매·도살하는 속칭 ‘식용개’ 농장을 단속할 관련법이 없다며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정부는 동물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 동물보호 전담부서의 부재

- 정부의 최상위 동물보호 업무는 농림부 방역총괄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와 동물방역은 방역을 함에 있어서 동물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뿐 둘 사이에 공통부분은 거의 없다.
- 농림부는 동물보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동물이용과 동물보호가 수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 지자체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한 전담 부서 혹은 인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부 내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부서 중 ‘동물보호’ 업무의 최고 상위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그러나 명칭으로만 본다면 농림부는 ‘어떻게 하면 동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를 하는 조직에 더 가까워 보인다. 특히 내부 조직도를 보면 과연 동물보호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그림 28].

현재 동물보호 업무는 농림부 내 ‘축산정책국 - 방역총괄과’ 소속 중에서 오직 2명이 보고 있다. 동물보호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소속된 ‘방역총괄과’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나 AI 같은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무차별적이고 무의미한 살처분을 강행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이런 부서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상위 부처의 조직도가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자(동물보호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도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축산과 등 가지각색이며 이들 역시 동물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기는커녕 동물보호법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담당자가 대다수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다르다. 2012년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 전담 부서인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었으며, 동물보호 업무에만 약 9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업무에 있어서는 농림부보다 하위 기관이다. 하위 기관인 서울시에는 독립된 동물보호과가 존재하는 반면, 최상위 기관인 농림부에 독자적인 동물보호전담 부서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가 계속 과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28]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도



Ⅲ 국내외 반려문화의 고찰

1. 국내 동향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 반려동물들 기르고 있는 가정은 17.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6년의 22.6%에서 2010년 17.4%로 대폭 줄었다가 2012년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상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반려동물 수를 개는 약 440만 마리, 고양이는 약 116만 마리로 추산하였다. 반려동물 사육 가정의 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고양이 사육이 늘어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는 2년 동안 22만 마리가 감소한 반면, 고양이는 약 53만 마리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표 3] 가정내 반려동물 수 추산

	개			고양이			전체
	06년	10년	12년	06년	10년	12년	
가구수(천가구)	17,858	19,261	20,033	17,858	19,261	20,033	20,033
사육비율(%)	22.1	16.3	16.0	1.4	1.7	3.4	17.9
평균 마리수(마리)	1.66	1.47	16.0	1.91	1.92	1.70	1.55
총 사육 동물수(마리)	6,551,206	4,615,198	4,397,275	477,510	628,689	1,158,932	5,556,207

출처: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한편,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자연사나 살처분된 동물의 수만도 47,000여 마리가 넘는다. 27,000여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분양되고 있지만 이들 중 다시 유기되는 동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 안위가 의심된다.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절차나 조건이 거의 없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입양하는지 알 수 없고, 사후관리 역시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동물 중 27%에게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었다는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 유기동물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동물보호단체나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책임 있는 새 가정을 찾아 입양보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는 입양가정을 찾기 더욱 힘들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보장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기동물 중 원래 보호자에게 인도된 9% 미만의 동물, 즉 8,700여 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불안정하거나 처참한 상황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행정추계만으로도 9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사람에게 버려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유기된 후 잔인한 죽임을 당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된 수많은 동물들은 이 통계에 합산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 버려지거나 학대당해 죽은 동물의 수는 행정추계를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

사회는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반려동물에게 길게는 30일, 짧게는 11일의 유예기간 두고 살처분과 폐사를 전제로 하는 ‘보호활동’을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2012년 한 해에 105억 8천 300만원이었다. 이렇게 동물들은 한국 사회에서 매년 ‘소모’되고 있다[별첨 4. 2012년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농림축산식품부, 2015.5.7.) 중 일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제 자리 걸음이며, 특히 개들의 총수는 줄어들고 있다. 거주형태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형태가 많아서 반려동물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과포화 상태이며, 오히려 동물유기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다.

2. 국외 동향

반려문화가 앞선 국가일수록, 보살핌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반려동물, 특히 개의 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 사이트를 표방하는 퀴츠(Quartz)에서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¹¹⁾의 세계 각국 반려동물 케어 산업동향 조사 자료를 집계하여 보도한 자료¹²⁾에 따르면 2007~2012년 동안 개들의 총 수가 스위스는 무려 9.8%, 가까운 일본도 4.3%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유럽연합은 평균 0.1% 감소율을 보였다[그림 29].

반면 매월 개들에게 급여하기 위한 사료 등 식료품 비용은 스위스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로 많은 금액인 월 36달러를 사용하였다. 유럽연합은 약 15달러, 미국이 그 뒤를 이어 14달러를 소비하고 있다[그림 30]. 매월 개들에게 급여하는 식료품 비용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국가들 중 8개국이 유럽대륙에 있다. 결론적으로 반려견에게 수준 높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행위와 반려견의 총 개체 수의 증가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12월 소비자연맹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대도시 거주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애완견’ 관리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을 보살피는 데에 연간 평균 66만 5천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 253,300(월 21,100원, 약 19달러)을 지출한 사료비(식료품비)로 나타났다.¹³⁾ 우리나라의 반려견 중 소형견의 비율은 82%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¹⁴⁾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작고 예쁜 강아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80%가 넘게 소형견을 키우면서도 매월 반려견의 식료품비로 유럽연합(15달러)과 미국(14달러)의 평균 지출액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11) Euromonitor International, 글로벌 시장 조사 리포트 발간, 산업 정보, 소비자, 국가별 통계 자료 온라인 출판사로 매년 각국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며, 각국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는 Pet Care 파트에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유기농 식품을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등 유럽 대륙과 유사한 소위 프리미엄화(premiumisation)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는 ‘고양이 사료’와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12) The Dog Index: What man’s best friend tells us about global economic development, Theresa Bradley, November 13, 2012,

<http://qz.com/26579/the-dog-index-what-mans-best-friend-tells-us-about-global-economic-development/>

13) 2013년 12월, 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항목별 지출액은 진료비 193,600원, 사료비 253,300원, 이미용비 112,100원, 용품비 106,500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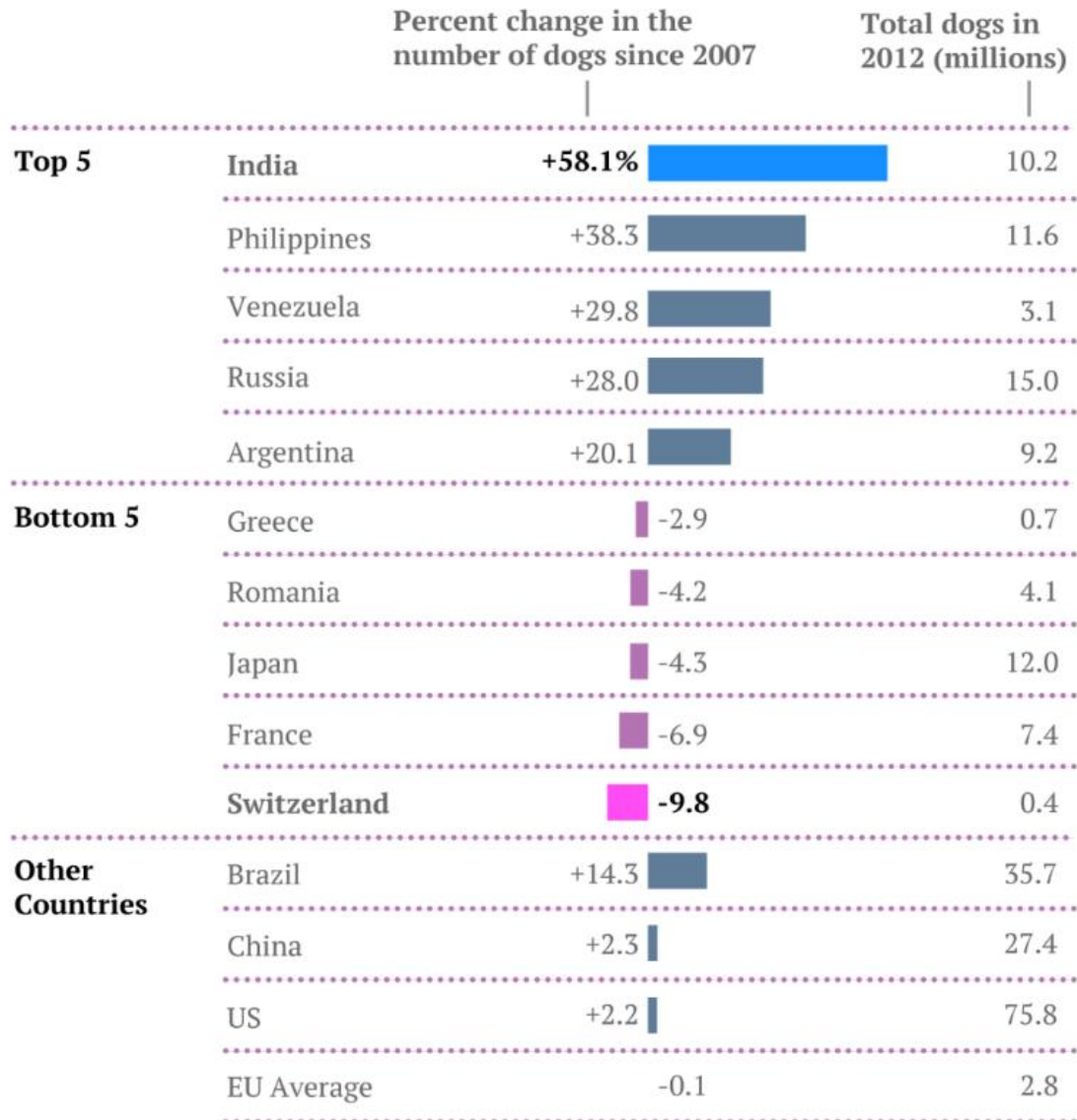
https://cuk.or.kr/sub02/news_view.asp?key=main_notice&num=520&page=2

14) 한국의 소형견 사육 비율은 82%로 2위 일본의 69%와 큰 격차로 세계 1위이다. 출처 퀴츠의 상동 자료.

한국도 수준 높은 보살핌이 늘어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반려문화가 높을수록 반려견의 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반려견 총 수는 감소하거나 최소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29] 2007~2012년 국가별 반려견 증감 추이

(가운데 막대는 증가추이, 오른쪽 수치는 반려동물 총수. 단위 백만)



Note: All the data comes from a study of 53 countries, including 22 in the EU.

Quartz

Data: Euromonitor

자료출처: <http://qz.com/26579/the-dog-index-what-mans-best-friend-tells-us-about-global-economic-development/>

[그림 30] 국가별 반려동물 사료(식료품) 소비 지출액
(월 53개국에 대해 조사. 이 중 유럽국가는 22개 국)

Monthly spending on dog food per dog



Note: All the data comes from a study of 53 countries, including 22 in the EU.

Quartz

Data: Euromonitor

자료출처: <http://qz.com/26579/the-dog-index-what-mans-best-friend-tells-us-about-global-economic-development/>

3. 한국 소비자의 문제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와 아파트 등 밀집형 공동주택 주거 형태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 특히 개를 키우는 가정의 비율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나 고양이를 가족으로 입양할 때는 반드시 1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평생반려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노령견이나 노령묘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동물병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국가들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비중이 동물의 ‘생산과 판매’에서 ‘평생 반려와 보살핌’ 쪽으로 이동하였다.

한 예로, 캐나다 농무성에서 발간한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¹⁵⁾ 2009년 캐나다 가정의 35.1%가 개를 키웠지만, 2010년에는 32.3%로 줄어들었다. 개들의 총수도 2010년 5백만 마리를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멈추었고, 이후로도 반려견의 총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¹⁶⁾ 이런 동향은 캐나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연령’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캐나다 반려견들의 평균 연령은 무려 5.9세이며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63%가 4살이 넘었고, 33%가 8살이 넘었으며, 단지 8%만이 1살 미만이다. 사료생산의 동향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2009년 건사료의 33%와 습식사료의 30%가 노령견(Seniro dog)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수치는 2008년에 18% 정도이던 데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의미심장하다.¹⁷⁾ 즉 동물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쓰는 대신 이미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해 바른 먹거리를 공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 투여로 의료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쪽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그림 31].

한국도 외국처럼 반려동물 산업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동물을 매입하여 소유’하는 데에서 ‘제대로 평생 반려하며 풍성한 유대의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키우는 동물들을 제대로 키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15) Consumer Trends-Pet Food in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Market Indicator Report, July 2011.

16) Challenges in the Pet Care Industry for 2014, Euromonitor International, January 19, 2014.

17) 상동 캐나다 농무성 소비자 리포트.

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2014년 블루슈머(Bluesumer)¹⁸⁾로서 과거지우개¹⁹⁾족 등과 함께 ‘반려족’을 제시하며 ▶ 반려동물 용품-유기농 간식, 친환경 목재가구, ▶ 서비스-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Dog TV 등 6개 사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2014년의 ‘블루슈머’로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을 유망 소비자로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려족’ 블루슈머들은 반려동물을 ‘구입’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좀 더 건강히 잘 키우려는’ 목적으로 유기농 간식, 친환경 목재가구 등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 국민들도 가족으로서 개나 고양이를 평생반려 하는 게 얼마나 큰 책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구입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반려동물을 더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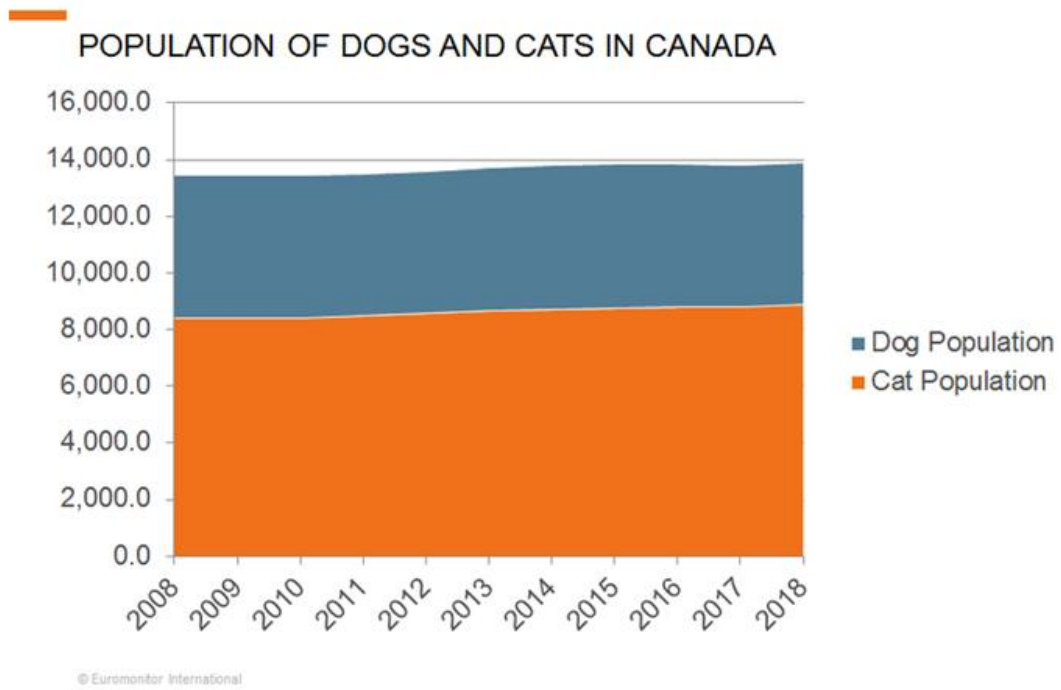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대량번식시킨 동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며, 점점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비자 중에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생명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도의를 다 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장난감처럼 생명을 다루며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충동적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업자들이 있다. 이들 업자들의 소비욕구 충동행위는 점점 더 정교해진다[그림 32].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포장된 자견들의 모습에 현혹되어, 애견업체의 홍보내용을 믿고 불티나게 구입 문의와 신청을 한다. 불과 3개월도 지속되지 않는 ‘못 견디게 귀여운 아기 강아지의 모습’을 즐기기 위해 농장에 갇혀 출산을 강요당하는 모견, 잡종이라는 이유로 폐기·유기되는 건강한 발바리들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순환시스템에 묶여 죽어서야 벗어난다. 이 끔찍한 순환시스템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도와준 것은, 결국 ‘동물’을 돈을 주고 매입하는 풍조를 만들고, 작고 귀여운 동물들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다[그림 33,34].

18)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블루오션의 새로운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은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3년에 그 해의 블루슈머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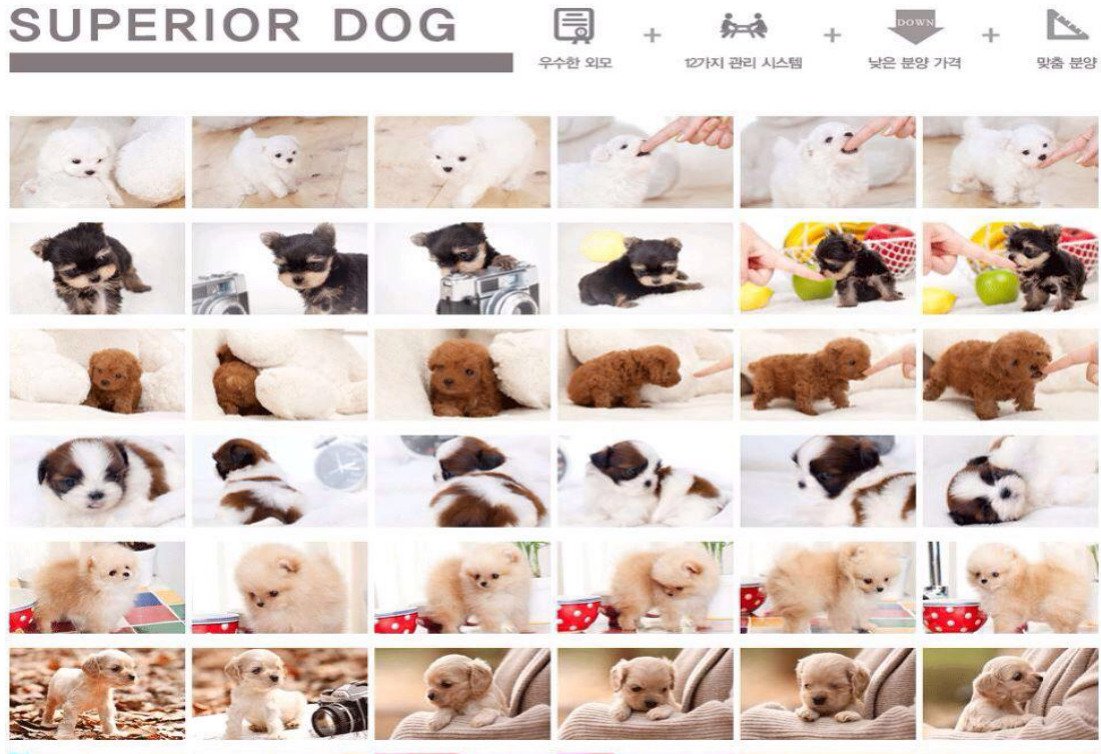
19) 통계청에서 2014년 유망산업으로 ‘디지털 흔적 지우기-취발성SNS, 디지털 세탁소’, ‘온라인 유산관리사업’을 제시하면서 이런 산업을 원하는 블루슈머를 과거지우개족이라 부른다.

[그림 31] 캐나다의 반려견 반려묘 개체수 추이



자료출처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2014.

[그림 32] 국내 모 애견분양사이트의 판매홍보 영상



이 업체는 노골적으로 ‘작은 개’의 구입을 부추긴다. 전문브리더(?)의 개들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구입 신청에 따라 경매장에서 해당 자견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들이 홍보하듯 “꾸준한 전문 브리더 회원 증가로 다양하고 많은 자견을 보유-정회원 483명, 준회원 721명(2013년 5월 기준)”하고 있고, 이 수 백명의 브리더로부터 강아지들이 공급되는 것이라면 모든 브리더들이 생산업 신고가 되어 있다는 증빙을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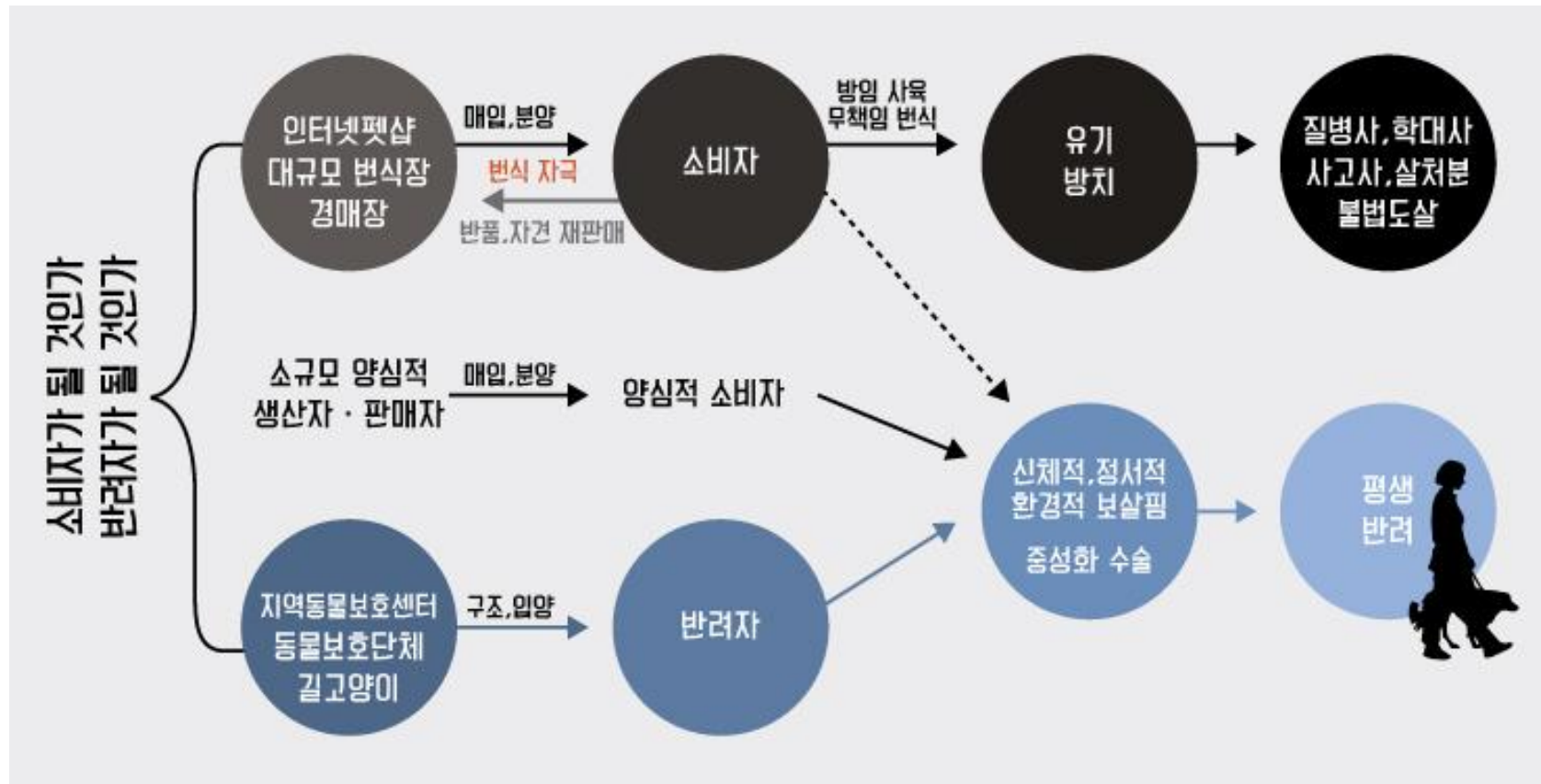
[그림 33] 토이사이즈 분양을 홍보하는 모 사이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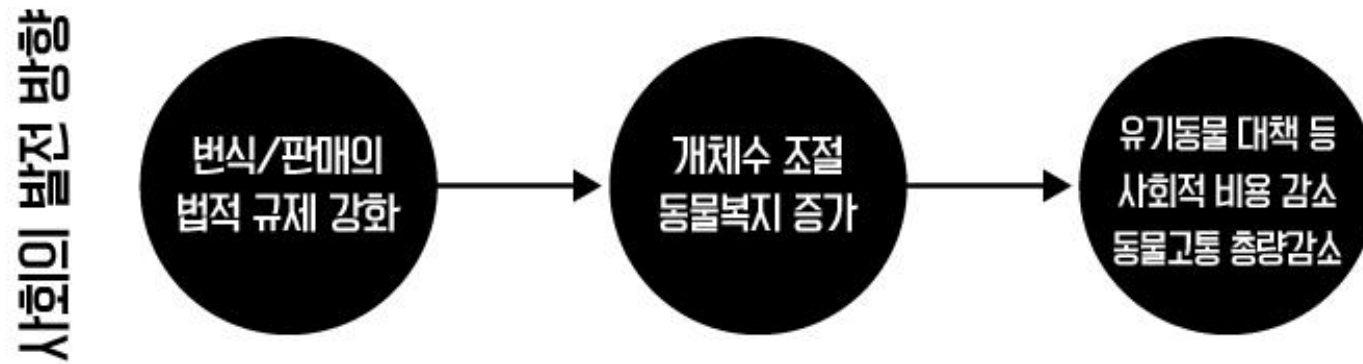
건강한 체력을 기반으로 한 월등한 외모와 조금더 작은 크기를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위해 만든 분양 서비스 입니다. 오랜 세월 전문 **브리더의 깊은 지식과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진보와 변화를 통해 개량 되어지는 우수한 견종.. **Famouse Dog**의 뛰어난 외모, 건강한 체력, 분명한 혈통은 당연, 브리더 클럽의 **Top Class** 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동물학대 수준의 소형견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다. 상기 판매 업소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하는 토이사이즈 개들의 생존율 홍보 자료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보통 토이 종 개들은 7~8세에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고,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동물이야 아프건 말건 토이사이즈의 기형적 개들을 즐기치게 원하는 소비자들이 바로 동물학대자이다.

[그림 34] 소비자가 될 것인가, 반려자가 될 것인가?



[그림 35] 사회의 발전 방향



IV 불법 번식장/경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1.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1.1 현행법에 근거한 조치

1.1.1 불법 번식장/경매장 조사 및 신고/등록 유도

- 농림부는 미신고/미등록 업소에 대한 적발과 행정처벌 등을 통해 이들이 현행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복지를 구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행법조차 지키기 않는 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적계는 100~200여 마리에서 많게는 700마리에 이르는 규모로 애완견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공장식 번식장에서부터 가정집에서 20~30마리 규모로 번식하는 일명 ‘개미농장’, 식용개 농장, 투견 농장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번식장 중에서 APMS에 번식업으로 등록된 곳은 2014년 2월 기준 단 56곳이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간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백히 농림부와 지자체가 번식장과 경매장의 난립을 방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업자들도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쉽게 번식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수질보호구역, 오폐수제한구역, 녹지보전지역, 도로인접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심지어 국유지와 사유지 등 애초에 동물사육이 불가능한 땅에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 생산 판매업 실태 전수조사 및 적법 업체 관리감독

-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의 주관부처로서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반려동물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도 조사하여 공급량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등록/신고 업체의 경우, 농림부가 지자체에 현장 실사 및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는 신고 전후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적법한 영업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생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모두 ‘판매업’으로 등록을 받다가 2012년 5월 생산(번식업) 신고/판매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2년 5월 이전 판매업 신고를 한 곳들의 경우 업태에 따라 번식업으로 기록되어야 하지만 APMS의 기록은 없거나 부정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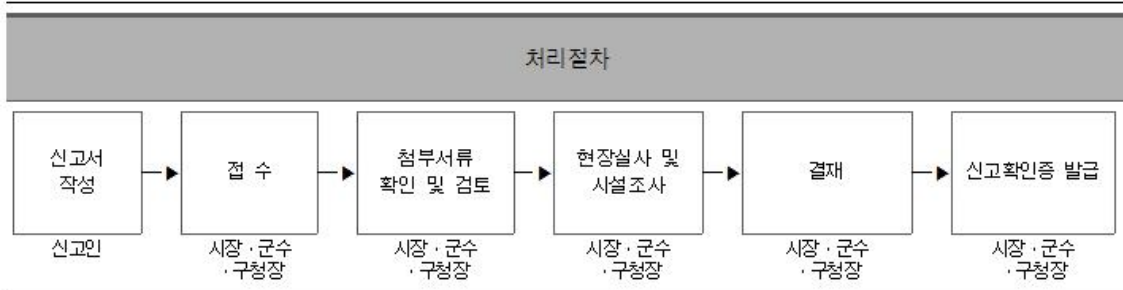
농림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반려동물 경매장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신고업자, 미신고업자 가리지 않고 경매에 참가시키며 공장식 대량번식을 부추겨 왔다. 농림부는 2013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번식장이 1천여 곳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업자들은 3~4천 곳에 이를 것으로 본다. 생산 판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보도자료에서 농림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함께 2013년 12월 중에 동물생산업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정확한 기초자료를 농림부, 지자체 등 어느 곳에서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과 관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1.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생산업 신고를 하고, 2. 동물보호법 제36조의 각 호, 즉,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의 판매가능 율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3. 사육장 면적이나 케이지 면적의 총합이 60㎡ (18평) 이상인 번식장의 경우 가축 분뇨의 분리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그림 3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별지 제22호서식]



농림부는 우선 생산업 신고 시 해당 지자체의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 및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업자나 식용개 판매 혐의가 있는 업자 등 동물보호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지키고 있는지, 식용개 판매 정황은 없는지 정기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법을 위배한 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1.1.3 불법 식용개 농장 폐쇄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발

- 농림부는 생산업 신고를 하고 식용개를 번식하는 농장이나, 미신고 상태로 식용개를 번식해 온 농장, 유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살장 역시 적발하여 폐쇄해야 한다. 물론 개 도살을 일삼는 도살업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식용개 번식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를 논하기조차 사치스런 상황이다. 처참한 동물의 삶과 잔인한 도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이 없다. 농림부는

2014년 2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합동으로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신중한 처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해 결국 ‘논의’ 말고는 20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미신고 번식장이 수천 개에 이르고, 몇 마리 죽든 말든 생산업자들이 모견을 혹사시키며 무한정 새끼를 뽑아내는 이유는 여차하면 식용개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반려동물 생산업을 개식용산업의 ‘식재료공급처’로 두는 한, 미신고를 불사하는 대량생산 문제는 풀 수 없고, 잔인한 도살과 같은 동물학대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2001년의 개고기 선호도 조사 결과 대학생의 경우 10%,²⁰⁾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6.4% 정도에 머물렀으니,²¹⁾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은 반려인구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선호도가 더 낮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20년째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적 합의’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림부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문제와 동물학대문제는 결국 개식용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가 동물보호의 가장 중대한 사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역설과 무책임한 직무 유기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농림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미신고 식용개 농장을 적발하여 폐쇄시키는 것이다. 신고하고 식용개를 번식하는 농장이나, 번식은 하지 않지만 도살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 역시 적발하여 폐쇄해야 한다. 물론 개 도살을 일삼는 업자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이미 식용개 업자들도 영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른바 ‘국민적 감

20) 박지오, 이정희, 유혜은, 성현이, 장경자, ‘대학생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식품의 성별, 지역별 섭취실태 및 섭취요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영양교육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2; 카라 <개식용산업실태보고서> 재인용, 2012.

21) 김진숙, 이미영, 정선희, 이정희, 김현덕, 이주희, 현태선, 장경자,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특수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 실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2; 카라 <개식용산업실태보고서> 재인용, 2012.

정'이 개식용 문화를 쇠락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수수방관만 하던 '무위(無爲)'의 태도를 거두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1.2 법 개정을 통한 조치

1.2.1 등록/신고제도의 보강 및 처벌규정의 상향

일반적으로 신고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적절하고 내용의 누락이 없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형식적 절차이지만, 현행 동물 생산업이나 판매업의 신고/등록 절차에는 현장 실사와 시설조사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 서류심사를 뛰어넘어 허가와 유사한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제도화하여 추후에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등록을 취소하고 다시는 동물생산/판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할 내용은 미신고/미등록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2.2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 개미농장의 일제 점검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생산업자의 영업실태와 모건 및 종건의 복지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자건을 대면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및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경매장 판매와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떼어와 애견샵 및 인터넷 홍보를 이용해 판매하는 업자도 점차 축소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현행법은 단 1마리만 생산 판매해도 생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오랫동안 법을 집행하지 않아 오히려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번식업을 하는 불법 개미농장이 성행하게 만들었다. 이를 제어하려면 판매업소에서 반드시 신고된 번식장의 동물들만을 판매하도록 동물의 이력을 표기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내 교배 번식에 있어서, 상업적 이득을 위한 동물 교배와 생산임이 명백한 경우, 즉 연간 10마리 이상의 동물을 생산 판매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신고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설과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판매경로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번식/판매업자의 신고/등록여부와 시설 일체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1.2.3 사육/판매 두수의 상한제 도입

- 60마리 이하 사육, 1년 내 연속적 임신 금지, 생후 60일 이후 판매

반려동물 생산은 반려인구 조사를 통해 사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100마리 당 한 명의 관리인원만 두면 사육 두수에는 제한이 없다. 만약 5인 가족이면 500마리를 사육해도 된다. 그러나 정기적 운동, 미용, 건강진단 등 제대로 된 보살핌을 하려면 1인당 100마리는 사실상 복지를 포기하는 사육 두수이다. 게다가 반려동물은 이후 사람 곁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십수년에 걸친 반려생활을 할 생명이기 때문에 공장식 대량생산 자체를 없애야 한다.

사육 두수를 50마리로 규제하고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미국의 선진적 주들만큼은 아니더라도, 60마리 이하, 1년 내 연속적 임신 금지, 생후 60일 이후 판매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판매 두수 역시 상한을 두어 규제해야 한다.

반려견의 총수가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인 연방법으로 전국의 판매자와 중개상(broker, 한국의 경매장에 해당), 반려동물총판매자(wholesaler)는 물론 2013년 11월부터 인터넷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소위 인터넷 퍼피밀에 대해서도 허가(license)를 받고 점검(Inspection)을 받도록 하고 있다.²²⁾

그리고 반 이상의 주에서 연방법 보다 더 엄격한 반려동물 생산자 규제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에서는 반려동물 생

22) APHIS(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역소)-Factsheet, Animal Care, February 2014.

산업소 당 키울 수 있는 번식용 개나 고양이의 상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만 75마리가 상한이며, 나머지 3개 주는 모두 50마리가 키울 수 있는 최대 마리수이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며, 반드시 사육장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의사의 연례 검진 의무화, 폐기동물 안락사 의무화는 물론, 철망 와이어(케이지)바닥 사육 금지, 사육장 쌓기 금지 등 매우 강력한 번식장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²³⁾

1.3 동물보호전담 부서의 신설과 전문성 강화

- 동물이용과 동물보호의 충돌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 전담부서의 마련이 시급하다.
-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제 및 관리계획’과 ‘개식용산업 문제의 해결 계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농림부 내 ‘축산정책국-방역총괄과’에는 오직 2명의 인원만이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농림부의 2014년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동물보호 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동물복지’라는 용어가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부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 부분에서 단 두 번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축산’이라는 동물이용 차원의 논리일 뿐이며, 동물보호 차원의 중점정책 기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농림부의 직제 개편을 통해 동물이용을 위한 동물복지를 넘어 국내의 각종 동물복지 관련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동물이용과 동물보호라는, 배치되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담당하는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물보호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변경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23) 상동.

현재 농림부가 준비 중인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장동물, 실험동물 복지조차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동물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반려동물로 태어나 식용개로 마감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36].

농림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제 및 관리계획’과 ‘개식용산업 문제의 해결 계획’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6]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농장동물	살처분 고통최소화 방안 마련	긴급행동지침(SOP) 상 동물 복지 관련 내용 없음	SOP에 살처분 대상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제시
	도축 시 동물보호 처벌 규정 신설	기준 및 처벌규정 없음	운송·도축시 동물복지적 최소기준 마련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동물복지축산농장 직불제 도입	없음	동물복지인증농가에 대해 최초 5년간 직불제 지급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확대	개만 대상, 인식표는 일반형·내장형·외장형으로 분류	대상 고양이로 확대, 내장형으로 일원화
	동물인수제 도입	없음	사육포기 반려동물 국가가 인수, 재입양 추진
	인터넷 동물거래 금지	규제 없음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 원천 차단
	동물입양센터 설치	없음	도심지에 설치, 동물인수제로 확보한 동물 입양 촉진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강화	동물실험 ‘심의·승인’ 권한	‘승인 후 감독’권한으로 강화
	초·중·고고생 동물실험 가이드라인 마련	개구리해부 등 일부 실험에서 학대행위 발생	동물실험 윤리기이드라인 마련 및 지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 영업자의 역할

반려동물 생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 전반에서 충분히 기술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① 신고/등록으로 준법영업
- ② 동물의 복지 보장
- ③ 적정 생산과 공급
- ④ 개식용산업과의 연결 금지
- ⑤ 신고/등록 불가의 경우 사업내용 변경

3. 소비자의 역할

3.1 사지 않고 입양하기

애견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은 번식장과 경매장의 판매를 지속시킴으로써 내가 산 강아지를 낳은 어미개의 삶을 계속 비참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평생을 함께 살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상품을 골라 쉽게 사는 방식의 반려동물 구매는 그만큼 과양이나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동물의 양산이라는 두 개의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한다.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을 만나는 것은 이 두 결과 모두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윤리적 소비라 할 수 있다.

3.2 품종 따지기 않기

품종을 따지는 기준은 동물의 건강도, 그와의 좋은 관계도, 각 개체가 가진 아름다움도 반영하지 못한다. 표준화된 순종을 만들어 내려는 집착으로 유사개체들 사이의 근친 교배를 이어온 결과, 유전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환경 적응력 및 건강의 확보에 실패하여 반려동물, 반려인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동물은 일부 호사가가 보고 고집하는 외모에 맞춰 강박적으로 개조되어야 할 예술품이 아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 진짜 최고의 개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일체의 학대로부터 보호된 개다.” - 웨인 파셀(휴메인소사이어터 대표)

3.3 건강하고 행복한 평생반려

동물복지의 범위는 이제 신체적인 것에서 정신적, 환경적인 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먹고, 넉넉한 공간에서 산책과 운

동물을 즐기고, 반려인과 애정을 나누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반려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동거를 시작한다면, 평생 가족으로 함께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V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지금까지 번식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을 거쳐 식용 도살로 최후를 맞이하는 반려동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추적해 보았다. 하늘이 주신 축복, 반려동물을 ‘애완’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그 틈새를 파고들어 더 빨리, 더 특이한 품종으로 갈아치우도록 유혹하는 업자들, 입으로는 동물보호를 말하지만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정부가 뒤엉켜 만들어낸 끔찍하고 슬픈 지옥을 보았다.

한편에서는 1년에 최소 24만의 생명이 소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10만의 생명이 유기된다. 24만 중에 평생반려의 길을 걷게 될 행운아는 과연 몇 마리나 될까? 반려인구가 18%밖에 안 되는데, 쏟아져 나오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대량생산-대량판매의 귀결은 대량폐기(라 쓰고 ‘살해’라 읽는다)일 수밖에 없다.

과연 끝낼 수 있는 지옥일지,
 죄 지은 사람이 간다는 그곳에 왜 죄 없는 동물이 온 몸으로 인간의 업을 대신하고 있는지,
 생각도 마비되어 꼬인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잡을 기운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보인다.

한번만 만져달라며 철조망에 매달려 지칠 줄 모르고 짖는 모견들,
 때 쓸 기운도 없이 절망과 희망이 범벅된 눈망울로 구석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말티즈,
 품종으로 태어났으나 용도폐기되어 설사똥을 싸면서 처분될 날만 기다리는 코카스 파니엘,

큰 덩치가 무색하게 철창 사이로 집어넣은 손에 하염없이 얼굴을 문지르는 포인터,
사람에게 꼬리칠 시간에 곧 헤어질 엄마품에 더 안겨 있었으면 싶은 철창 속 치와
와 모견과 자견....

1년에 끝낼 싸움이라면 1년을,
5년이 걸릴 싸움이라면 5년을,
혹여 살아생전 계속될 일이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패악이라
생명이 평화롭고 온 숨을 쉬게 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길이니,
머뭇거릴 꼬투리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려동물 번식과 판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가야할 길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배신을 신뢰로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반려’의 원래 의미,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관계, 높은 차원의 보살핌을 주고받는 관계를 되찾는 일이다.

후미진 구석에서, 농장에서, 도살장에서 인간의 탐욕과 그릇된 생명경시 풍조로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들... 그러나 말 못하는 동물들은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카라는 만들어졌다.

카라가 있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이 길에 머뭇거림은 있을 수 없다.

[별첨 1]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 성명서(2014. 2.5.)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 성명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8번길 77호 / 042)822-5114 / 사무총장 홍성호

♣2014년2월4일 PD수첩방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경기경매장, 광주경매장, 알프경매장, 유성동양경매장, 부산경매장, 대구경매장, 대경경매장, 서부정매매장, 코아스경매장, 한국경매장 이상10곳, 무순

가)반려동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및 동물판매업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몰지각한 업체의 판매행태를 전무인양 방출한 PD수첩은 공계사과 및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나)PD수첩이 취재 보도한 경매장은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들이 아니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한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이 대표로 운영하는 D경매장의 경매장대표 방송인터뷰는 경매장협회와는 무관합니다. 특히나 육견을 거래하는 시장은 경매장이란 상호를 사용하고 절차가 같지만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며 반려동물만을 전문적으로 유통 및 거래하는 반려동물 전문경매장하고는 전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경매장협회에서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키 위해 2012년부터 개체관리카드 작성 이를 위한 경매시 농장출하자의 개체정보카드 제출 의무화 등 60일령 판매준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생산을 위해 격월로 우수종모견 경매를 통해 생산농가에 유통보급 하고 있습니다.또한 경매 개시 전 파보바이러스 및 홍역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장출하자의 출하자견을 진단키트를 통해 사전점검 및 검사 후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경매장협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위하여 독거노인 돕기 및 고아원후원 등을 통해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생산업자의 번식환경개

선 및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달 질병 및 사양관리 등 농장생산업자의 동물보호법준수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세미나를 협회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일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의 몰지각한 번식농장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의 반려동물로 노령견 및 폐견(방송분)과 자연사 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돌보며 생을 마감하게끔 대부분의 생산농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파 방송으로 인해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PD수첩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큰손실로 심적 고통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본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와 동물보호, 사육환경개선동물보호법 및 소비자기본법준수 및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 및 협의 바랍니다.

2014년 2월 5일

한국반려동물경매장협회 회장 이해영
한국펫샵협회 회장 김영덕
대한반려동물번식자협회 회장 박승철

[별첨 2] 애완동물경매장에서 팔려 무참히 도살된 리트리버와 펠러뮤트 (2014. 2.3.)

이 서오름과 철망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한 개도살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서오름을 아시나요?
중장년층들이라면 어릴 때 소풍가서 놀던 서오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오름 펜스와 뒷마당을 접하고 있는 한 노인 집의 펜스에는 검은 차광막이 쳐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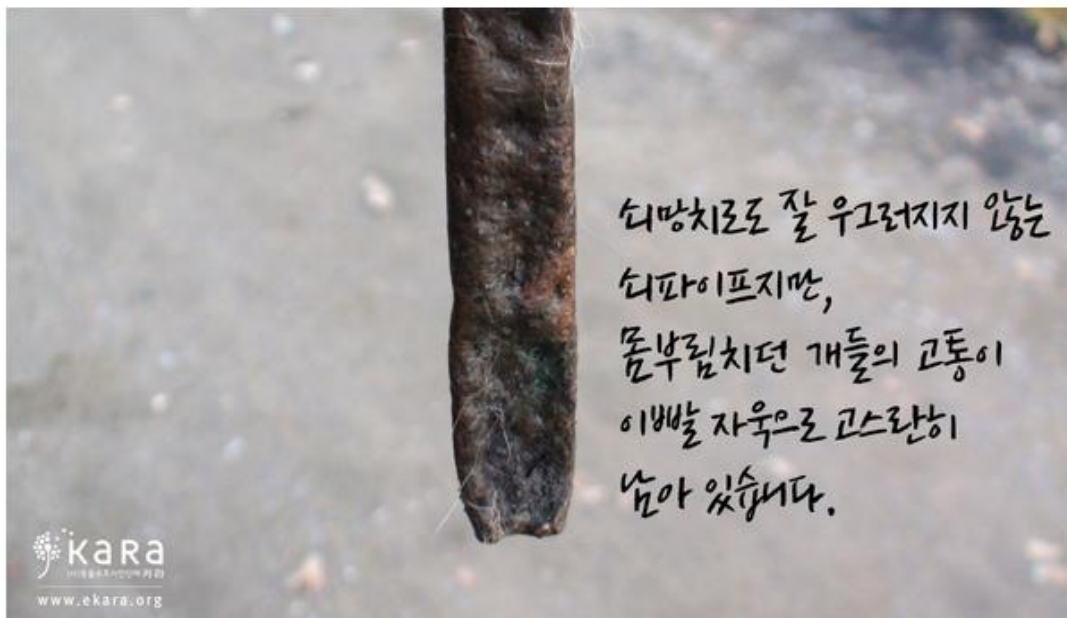
이 사람은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나들이를 나섭니다.
인근 경매장에서 개들을 골라 사오기 위해서입니다. 애견숍이라도 운영하는 걸까요?
매주 많은 개들을 사오는 이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작년 12월부터 일요일마다, 이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근 '경서전건종애견경매장'에서 매주 개들을 적게는 2마리에서 많게는 20여 마리를 구입해 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매장의 내부에서는 애견숍 진열 판매용 어린 강아지들이 경매되고, 외부에서는 안 팔린 어린 대형견, 쓸모없어진 모견과 노견들이 헐값에 경매됩니다. 이 경매장에는 유난히 덩치가 큰 리트리버가 많이 있습니다.

(중략)

카라는 개들을 사들인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당 뒤편에서 십여분 정도 이어지는 목이 조이는 듯 처절한 개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죽인 것으로 보이는 개들을 손수레에 실어 자신의 집 지하에 던져 넣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뚫린 지하실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도살자의 지하실은 혐기적 도살현장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살자는 사랑을 갈구하는 경매장의 개들을 사들여 자신의 마당에서 상습적으로 도살해 왔던 것입니다.

(하략)



원문보기: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3025

http://www.ekara.org/board/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3067&page=0

[별첨 3] 2013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시범사업)

(단위 : 천군, 천원)

구 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13.5	11,340	4,860	16,200	○ 실시대상 : 애완견 생산 농가 ○ 실시기간 및 방법 : 상·하반기(2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200원 - 국 비 : 840원, 지방비 : 360원 - 국 비 : 70%, 지방비 : 3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내 애완견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개최, 약품 종류·구매·공급 방법 등 결정 * 지원약품 : 개의 기생충(소화기기생충, 외부 기생충에 한함) 구제제 및 피부외용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내 애완견 생산 농가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시요령에 따라 약품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 영업신고 대상 임을 지도 - 약품 공급은 분기별로 나누어 협의회 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요구 하는 약품 지급 ○ 공급 실적보고 - 예방약 공급 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 공급실적은 월별로 확정
부 산	18	15,120	6,480	21,600	
대 구	13.5	11,340	4,860	16,200	
인 천	36	30,240	12,960	43,200	
광 주	11.25	9,450	4,050	13,500	
대 전	9	7,560	3,240	10,800	
울 산	4.5	3,780	1,620	5,400	
세 종	0.5	420	180	600	
경 기	54	45,360	19,440	64,800	
강 원	13.5	11,340	4,860	16,200	
충 북	13.5	11,340	4,860	16,200	
충 남	22.5	18,900	8,100	27,000	
전 북	18	15,120	6,480	21,600	
전 남	15.75	13,230	5,670	18,900	
경 북	18	15,120	6,480	21,600	
경 남	13.5	11,340	4,860	16,200	
제 주	0	0	0	0	
계	275	231,000	99,000	330,000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73쪽

[별첨 4] 2012년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농림축산식품부, 2015.5.7.) 중 일부

<p>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p> <p>농림축산식품부</p> <p>보도자료</p>	<p><i>희망의 새시대</i></p> 
<p>2013년 5월 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신성암 과장, 나병승 사무관(031-467-1866) / 제공일: 5월 7일(총10매)</p>	

2012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

- 동물의 등록·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 실태조사 결과 자료 -

《 주 요 내 용 》

- ◇ 반려동물(犬)의 등록
 - 전국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20,737두 등록(금일누계 : 332,153 두)
- ◇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발생 : 99,254두
 - 처리 : 분양 27,223두(27.4%), 안락사 24,315두(24.5), 자연사 23,012두(23.2)
- ◇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 : 1,834,천두
- ◇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인증 : 36개소(501천 수)

□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마리)

구분	유기동물 발생 수				유기동물 처리수								보호기간(일)	연간비용(백만원)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인도 ¹⁾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²⁾	기타 ³⁾		
계	99,254	59,168	39,136	933	99,254	8,734	27,223	1,518	23,012	24,315	9,552	4,900	20	10583

1)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2) 고양이에 한하여 중성화 수술 후 방사
 3) 보호조치 중, 미포획 등